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062 |
|----------|-------|

발의연월일 : 2019. 3. 8.

발의자 :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김병관 · 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

칙규정이 없음.

이에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4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4조제4항제3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로,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p> <p>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u>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 <p>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p> <p><u>① -----</u> <u>-----</u> <u>-----</u> <u>-----</u> <u>-----</u> <u>-----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벌금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p> |
| <p>제54조(벌칙) ① ~ ③ (생 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 (생 략)</p> <p>3. <u>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u></p> | <p>제5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u> <u>-----</u> <u>-----.</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22조의2제1항을-----</u> <u>-----</u> <u>-----</u> <u>-----</u></p> |

| | |
|---|--|
| 를 수행하게 <u>하거나</u> 자격증 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 7. (생 략) <u><신 설></u> | -----한----- ----- 4. ~ 7. (현행과 같음) 9.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